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83

발의연월일: 2024. 6. 24.

발 의 자:한정애·황 희·조 국

민홍철 · 송옥주 · 이학영

진선미 • 박지원 • 김교흥

민병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당 1년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고, 그 기간도 짧아 실질적인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,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,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자녀 1명당 1년 6개월 이내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

고 일·가정 양립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)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1년"을 "자녀 1 명에 대하여 1년 6개월"로 한다.

-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(이하 "육아휴직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 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2.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3. 근로자가 장애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·정 신적 장애를 말한다) 또는 질병(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 관의 장이 6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로 한정한다)이 있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"만 8세"를 "만 12세"로, "2학년"을 "6학년 이

하, 장애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·정신적 장애를 말한다) 또는 질병(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이 있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 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 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 - ②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도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임 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(이하 "육아휴직"이 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개 정 안

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근 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(이 하 "육아휴직"이라 한다)을 신 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 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
- 1.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

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

 경우
- 2.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3. 근로자가 장애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·정신적 장애를 말한다) 또는 질병(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

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<u>1년</u> 이 내로 한다.

③ ~ ⑥ (생 략)

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<u>만 8세</u>이하 또는 초등학교 <u>2학년</u>이 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(이하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, 정상적인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S) -
정한다)이 있는 만 16세 이하
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
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
한 경우
② <u>자녀 1</u>
명에 대하여 1년 6개월
<u>.</u>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①
<u>6</u> 학년 이
하, 장애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
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・정신

적 장애를 말한다) 또는 질병

(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

료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의

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

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이 있

교 1학년----

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

1	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